

UNCITRAL 제36차 본회의 참관기

박 환 일 (경희대 법대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심의
3. 도산법에 관한 심의
4.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채택
5. 각종 보고서의 심의
6. 상사 사기에 관한 향후 과제의 검토
7. UNCITRAL 회의의 중요성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제36차 본회의가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 6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 논의 해온 다양한 법률과제를 총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거래법의 이슈를 각 국 대표가 격의 없이 토의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필자로서 본회의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국제거래법의 동향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본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는 별도 논문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1. 머리말

미리 참가국들에 배포된 UNCITRAL 제36차 본회의 의제(provisional agenda, A/CN.9/519)¹⁾ 1)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본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²⁾

- 6.30~7. 2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 심의

1) UNCITRAL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 Working Groups

2)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제1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온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으므로 2002년 9월의 민간투자법에 관한 실무작업반회의를 주재했던 스웨덴 대표인 닐슨 변호사가 가장 책임자라 하여 본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7. 3~7. 4 도산법제(Insolvency Law)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토의
- 7. 7~7. 8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채택 여부 결정, 실무작업반의 중재(Arbitration), 운송법(Transport Law)에 관한 작업결과 검토
- 7. 9~7.11 유엔 법무담당 사무차장보(Hans Corell)의 연설, 향후 과제로서 상사 사기 (Commercial Fraud) 및 기타 의제에 관한 논의, 최종 보고서의 확정

2.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심의

가. 모범법규정의 내용 및 상호관계

UNCITRAL에서 2000년에 확정하고 그 다음해에 책자로 간행한 민간투자에 관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의 부록(Addenda)인 보고서(A/CN.9/522/Add.1-2)를 토대로 토의를 벌였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 문(Forward)

제1부 입법권고(Legislative recommendations)

- I. 일반적인 법제의 기준(General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 II. 프로젝트 리스크와 정부의 지원(Project risks and government support)

제2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모범입법규정(안)(Draf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 I. 총 칙 (General provisions)
- II. 사업시행자의 선정(Selection of the concessionaire)
- III. 인프라시설의 건설 및 운영(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 IV. 사업실시협약의 기간, 연장 및 해지(Duration, extens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cession contract)
- V.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사실 UNCITRAL은 각국의 민간투자법제를 통일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건설을 위한 국제 민간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각국에 입법지침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용이 어려워 좀더 국내입법이 용이하도록 핵심사항만 권고(recommendation)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가 이것도 쉽지 않다 하여 다시 구체적인 법규정 형태로 모범법규정을 만들어놓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UNCITRAL이 만들어 놓

은 세 가지 입법참고자료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각국이 이를 수용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본회의는 2000년에 채택된 입법지침 및 권고가 모범법규정의 토대(platform)가 되는 것이며,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3자의 관계를 ① 입법권고와 모범법규정을 나란히(parallel text) 채택하든가, ② 입법권고 전체를 모범법규정으로 대체하든가, ③ 본회의에서 모범법규정을 채택하는 범위에서 입법권고를 대체하든가 이들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기로 하였다.

나. 본회의의 심의 내용

본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A/CN.9/522/Add.1)를 놓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 관한 규칙(모범법규정 제5조)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예비자격심사(pre-selection) 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미 UNCITRAL이 1994년에 정부조달에 관한 모범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무국 측의 해명이 있었다.

응찰내용의 평가기준(모범법규정 제14조)과 관련하여 응찰내용 등 비밀(confidentiality)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 측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밀은 유지되지만 공개경쟁입찰, 전자방식의 입찰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s)의 채택(모범법규정 제22조)에 관하여는 의장이 실무작업반에서 장시간 토의한 결과임을 설명하자 각국 대표들이 이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타 배타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실무작업반에서 결정한 대로 특별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상의 비밀유지(모범법규정 제24조)에 대하여는 장시간 토론이 벌어진 결과 입법권고 일부 구절의 삭제, 수정이 이루어졌다. 즉, 주무관청(contracting authority)은 입찰 제안한 내용이 다른 경쟁입찰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를 요구받거나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하지 않은 한 협상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협의, 통신, 협상과 관련된 기술, 가격 기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은 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³⁾이라 할 수 있다. 그

3) 일반적으로 'Concession Agreement'라고 하는데 2002년 9월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Concession은 제국주의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그 용어를 바꾸었다.

내용을 둘러싸고 모범법규정 제28조에 열거된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예시적인지 의문이 대두되었는데, 사무국 측은 이미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장시간 토의를 벌였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나라마다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보고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업실시협약의 양도(모범법규정 제36조)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는 이 모범법규정을 보면 “사업실시협약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으므로 차라리 이것들을 통합 정리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였다. 한국 대표는 그 이유로서 첫째, UNIDO가 일찍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고,⁴⁾ 둘째, PFI 사업을 수행할 때에도 파생금융상품 거래 시 ISDA 표준계약서를 이용함으로써 변호사비용을 크게 줄인 사례⁵⁾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표준계약서는 북한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경험이 없는 정부당국자를 설득하기에 용이할 것이고, 넷째, 이러한 작업은 유엔이 제창한 지식경영 이념과 합치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둘째 주에 논의할 ‘향후 과제(possible future work)’에서 다루자고 제의하였다.

3. 도산법에 관한 심의

가.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안)의 개요

제5 실무작업반에서 지난 1년에 걸쳐 작업한 도산법 입법지침(안)(draft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의 프레임워크(A/CN.9/534)를 놓고 사무국의 법무담당관이 항목 별로 설명을 하고 각국 대표가 이에 대하여 질의, 논평, 수정제안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각국 대표는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에 따른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스페인, 러시아, 콜롬비아, 폴란드 대표는 자국의 도산법체 제정 및 개정 시 UNCITRAL 입법지침을 유용하게 이용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사무국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2003년 중에 초안을 완성하고 각국과 유관기구에 의견을 조회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3월 실무작업반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도산법체에 있어서 최근 각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비공식적 재건절차(informal reorganization)를 입법지침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특히 정부 또는 중앙은

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Guideline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rough Build-Operate-Transfer (BOT) Projects*, 1995.

5)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에서는 스왑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약서를 표준화하여 거래 유형별로 마스터 계약서를 만들고 당사자간의 특약사항 및 거래조건은 각각 부속서(schedule), 확인서(confirmation)로 정하게 함으로써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행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재건절차(administrative process)를 정식으로 입법권고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의장은 실무작업반이 현황을 소개한 것일 뿐 입법권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도산법제(Insolvency Regime)의 핵심규정과 관련하여 사무국 측이 도산절차의 신청자격(eligibility) 및 관할, 신청절차, 개시(commencement)의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국 대표가 이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근로계약 상의 채권으로 부인권(avoidance actions)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UNCITRAL의 입법지침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상계(set-off), 네팅(netting)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각국 대표는 물론 옵서버로 참석한 ABA(미국변호사협회), IMF 등의 대표는 현재 국제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상계와 네팅이 담보 또는 도산에 대비한 법적 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재건계획(reorganization plan) 및 신속재건절차(expedited reorganization proceedings)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대체로 각국 대표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 채권의 처리, 도산절차 개시 후의 자금조달(post-commencement finance), 우선권(priorities)과 배당(distribution)에 있어서 한국 대표는 후순위화에 대한 상세한 입법지침은 각국의 입법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작업반의 향후 과제로서 사무국 측은 도산절차 개시후의 자금조달, 각국의 상이한 용어의 해설(glossary), 상계와 네팅, 세계은행 지침과의 비교 등의 순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담보권 실무작업반과의 공동작업 방안에 대하여 사무국 측은 합동회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산법의 입법지침이 먼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세계은행과의 프로젝트 협조방안

현재 세계은행에서도 도산법의 원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세계은행 대표는 “원칙과 지침”(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 Rights Systems)의 성립배경 및 개정작업 상황을 소개하고 UNCITRAL 입법지침과 차이가 있으면 서로 보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single internationally developed standard)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IMF 대표 역시 세계은행의 작업에 공동참여

하고 있음을 밝히고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uniform common standard)의 설정,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실시 등에 대하여 소개했다.

세콜렉 사무국장은 UNCITRAL과 세계은행의 성격이나 목적이 약간 다르지만 상호 회의참석 및 협의를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공통된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본회의 의장은 2003년 9월 UNCITRAL 도산법 실무작업반 회의에 세계은행, IMF 대표를 정식 초청하면서 도산법 원칙에 관하여 공동으로 토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의 채택

의장이 예고한 대로 둘째 주 모두에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정을 3가지 옵션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각국 대표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모범법규정을 일단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입법권고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2000년 UNCITRAL 본회의에서 채택된 입법지침에 포함된 입법권고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마련된 모범법규정이 주된 참고가 될 것이라는 입장, 모범법규정으로 수정된 범위에서 입법권고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는 2000년에 채택된 입법권고는 그 자체가 실무작업반의 노력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니 그대로 인정하되, 모범법규정은 입법권고를 상당 부분 수정하고 개선하였으므로 수정되지 않은 입법권고 사항은 전문(recital)에 포함시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와 아울러 UNCITRAL 보고서의 이용자가 정부나 의회뿐만 아니라 업계의 전문가, 일반인도 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계약에 관한 모범적인 실무관행(best practices)을 사무국이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입법권고와 모범법규정을 통합하여 발간(consolidated publication)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무국 측의 의견표명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잠정적으로 발간에 필요한 예산⁶⁾을 확보할 때까지는 새로운 모범법규정과 이번에 수정되지 않은 입법권고를 한데 모아 따로 발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범법규정이 입법권고를 발전시킨 것인 만큼 입법권고를 전체적으로 모범법규정과 통합하여 발간하되 입법지침에 수록된 주석(설명자료)을 포함하여 2000년 본

6) 사무국에서는 2000년에 채택된 민간투자에 관한 입법지침을 6개 공용어로 간행하는 데 이미 4만 유로를 집행하였음을 보고하고 수천 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1~2년 안에 통합보고서를 다시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통과된 입법권고를 한 권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입법권고를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입법담당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고, 실체적 내용(substance)과 관계없는 용어 및 체제의 통일, 자구의 수정 등(editorial change)은 사무국에 일임하기로 하였다(A/CN.9/XXXVI/CRP.1/Add.1/Corr.1).

한국 대표가 향후과제로서 제안한 민간투자에 관한 사업실시협약의 표준 내지 모범실무관행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의장이 각국 대표의 의견을 묻자, 이는 매력적인 과제(wonderful project)이기는 하지만 분야가 너무 방대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소극적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UNCITRAL 사무국장도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백 가지도 넘는 터에 이에 관한 전문가가 없는 사무국에서 4명의 담당관이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말했다. 다만, UNCITRAL이 이미 제정한 바 있는 건설사업에 관한 계약지침을 개정하거나 UNIDO, ECE(유럽경제위원회) 등 UN 산하기구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5. 각종 보고서의 심의

가. 중재에 관한 제2 실무작업반 보고서

사무국 수석법무담당관의 경위 설명에 이어 2003년 11월에 열리는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각국 대표의 의견표명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중재와 관련하여 OECD와 협력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회사내의 주주와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중재로 해결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 운송법에 관한 제3 실무작업반 보고서

사무국이 2002년 9월과 2003년 3~4월에 열린 실무작업반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자 운송법에서는 다뤄야 할 과제가 많고 각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회의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의장이 실무작업반 별로 1주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주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다.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제4 실무작업반 보고서

사무국 법무담당관이 전자방식의 계약체결에 관한 협약(안) (draft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ing),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장애(legal obstacles) 조사, 전자 방식에 의한 권리의 양도, 입법권고안의 작성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2003년 5월 뉴욕에서 열린 실무작업반회의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등에 관한 WIPO 등 유관 기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라. 담보권에 관한 제6 실무작업반 보고서

사무국 수석법무담당관이 2002년 12월 및 2003년 3월에 열린 실무작업반회의의 결과를 보고하고 입법지침에는 전자등기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 UNIDROIT와의 공동작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등기와 관련하여 EBRD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들어 일관성 있는 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더 나아가 담보권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UNIDROIT, EBRD, UNCITRAL내 도산법 실무작업반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회의(expert meeting)를 갖자는 제안도 나왔다.

마. 기 타

(1) 뉴욕 협약의 현황에 관한 보고

사무국 측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러시아 대표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우 동 협약가입이 긴요한 만큼 정보제공 및 자료수집 등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에 관한 보고서

사무국 법무담당관은 1994년 UNCITRAL이 공공구매에 관한 모범법을 제정한 이래 EU,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에 관한 규범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공공구매의 관행이 바뀌어 모범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전자방식의 구매(electronic procurement)가 널리 일반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폴 대표는 정부의 조달이 법률이 아닌 정부내 규정(internal directive or disciplinary process)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UNCITRAL 모범법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 말하고, 그보다는 모범관행(best practices)이나 표준계약서(model contractual provisions)가 더 요청된다고 말했다.

(3) 기타 의제

사무국에서 UNCITRAL 협약에 관한 케이스로(CLOUT), 물품매매협약 등에 관한

판례 다이제스트, UNCITRAL의 연수 훈련 및 기술지원 실적, UNCITRAL 활동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4) 향후 실무작업반의 회의일정

UNCITRAL의 연간 회의기간이 12주이므로 각 실무작업반 별로 1주일씩 회의를 하되, 도산법과 담보권 회의는 연속(back-to-back)하여 열기로 하고, 작업량이 많은 운송법 회의만 2주간 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른 향후 1년간의 각 실무작업반 회의일정이 공표되었다.

6. 상사 사기에 관한 향후 과제의 검토

UNCITRAL의 향후 과제로서 사무국장이 상사 사기에 관한 보고서(Possible Future Work relating to Commercial Fraud, A/CN.9/540)를 요약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사 사기가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으므로 UNCITRAL이 이에 대해(combating commercial fraud)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각국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과 국제기준의 조화와 일치를 위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lloquium)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싱가폴 대표는 이러한 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사 사기의 정의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미국 대표는 재무부에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사기거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 분야에 관련 있는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고 역할을 분담할 예정임을 밝혔다.

UNIDROIT 대표는 프랜차이즈 모범법을 제정한 경험을 살려 자산금융(asset-based finance)에 관한 국제담보권협약 등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동 기관과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등 3기구 사무국장의 정기회동 등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코렐 사무차장보도 인터넷에 관한 법적인 구조와 틀(legal architecture framework)을 강조하고 WIPO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7. UNCITRAL 회의의 중요성

금번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여러 해를 끌었던 민간투자에 관한 모범법규

정을 확정하고 각국이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부터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컸다. 특히 한국은 북한 지역에서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사업을 벌였거나 벌일 예정이므로 UNCITRAL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항은 모범법규정 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의 내용 및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설명하고 국내법과 국제규범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년과 내년의 막바지 작업에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비중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엔 한스 코렐 사무차장보가 7월 10일 본회의 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2003년 하반기 유엔 총회에서는 UNCITRAL의 회원국을 60개국으로 늘리고 사무국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⁷⁾ 이는 UNCITRAL이 국제상사법 분야의 조화와 통일을 이룸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UNCITRAL은 2001년까지만 해도 3개에 불과하던 실무작업반을 6개로 늘렸는데, 재정이 뒷받침되는 대로 사무국의 기능을 하나는 통일적인 국제거래 법규정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대외협력사업과 대개도국 기술지원, 2~3회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에서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UNCITRAL의 각종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대표들과 교류를 증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상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분야에 정통한 신진(특히 여성)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계 전문가들이 각종 회의에 계속 참가하여 주목받는 발언을 하고 주요국 대표단과 친분 있는 교류를 확대한다면 조만간 매우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월간 『경영법무』, No.103 (2003.8)>